

용산참사 생존자 망루농성 철거민, 검찰피해 사례

■ 요약

용산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강제부검을 단행하고,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행했으며, 수사에 있어서 모든 혐의를 철거민들에게만 뒤집어씌우는 편파수사, 경찰 지휘부와 철거용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은폐·왜곡수사로 일관했다.

기소독점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은, 망루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범죄혐의만 다뤘을 뿐,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였다. 기소된 철거민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더니, 법원의 명령에도 수사기록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결국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일련의 행위들은 인권침해와 편파·왜곡수사 그리고 사건의 은폐와 재판 방해 등 스스로 불법을 행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 피해 사례

▶ 심야조사 등 인권탄압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정병두)과 수사참여 검사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구속철거민들이 2009년 1월 국가인권위에 “검사들이 철거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정 넘어 밤샘조사를 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면서 진술을 왜곡하는 등 편파 부당수사를 한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0년 2월 9일 인권위는 검찰에 의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소속 수사검사들에 대해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해야 할 헌법사의 원칙과 관련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편파수사

검찰은, 철거민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였을 뿐 철거용역 및 경찰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편파수사로 일관했다. 망루에서 극적인 탈출을 한 생존자인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물포를 쏘고, 농성 건물 아래층에 불을 피우며 폭력을 가한 철거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으며,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의 결정(2010.2.9)과 달리, 검찰은 구속된 철거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항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도적 방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이에 2009년 2월 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하여 배심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 정치재판화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속개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서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는 등 증거조사에만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입증계획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은 증거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내려지자 이후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는 애초에 법원에 요구하였던 61명 증인신청 등 방대한 증거조사 요구를 철회했다. 검찰이 준비절차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입증계획을 제출한 것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해서 철거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용산사건의 재판에서 민주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두려워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경과

- 2009. 2. 13경 피고인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
- 2009. 2. 27.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2009. 3. 5. 변호인들의 의견서 제출
- 2009. 3. 11. 검찰의 의견서 제출(취지 : 국민참여재판 진행시의 문제점-재판절차 진행상의 문제점, 배심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 배심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
- 2009. 3. 24. 검찰이 증인신청 및 입증계획 제출
 - 신청증인 61명에 대한 예상소요시간 60시간
 - 증인신문의 증거조사 소요시간 : 피고인신문 8시간, 피의자신문조서 요지고지 13시간, 진술서류 낭독 예상시간 10시간, 동영상 증거조사 핵심부분 14.5시간
 - 검찰측 증거조사 필요시간 : 115.5시간
- 2009. 3. 26. 변호인들이 입증계획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수사기록 은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재판 초기부터 검찰이 피고인측에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 2,000여쪽(약 3천쪽)이 문제되어 용산 사건의 재판은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용산사건의 변호인단은 2009. 3. 10. 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의 목록을 교부받고 검사가 당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던 수사기록 가운데 피고인들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담당 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09. 3. 26.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열람·등사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 2009. 3. 27. 열람·등사거부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재판부에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9. 4. 14.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하여 계속해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으며, 법원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단은 2009. 5. 14.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거치는 동안 약 3개월 정도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가지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단순히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불복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위반은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 2010년 6월 24일에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에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는 철거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기록 2000여 쪽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자, 오히려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2010.1.14)을 내는 일일 발생했다.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이 재판부를 기피하는 신청을 낸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검사의 수사기록 은닉이라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존 철거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중형이 구형,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위법하게 진행된 1심의 기록들이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 故 이상림열사의 차남 이충연 씨 등 7명의 망루농성 생존 철거민들이 '특수공무 집행치사'로 4~5년의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다.

* 화재발생으로 망루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부상을 입은 2명은 아직까지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도 1심에서 4년이 선고되었고, 치료가 필요해 법정구속은 면하여 항소심(6/28)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